Total Solutions in Policing
치안정책연구소

SOCIAL SECURITY PARTNERS
안전파트너스

홍보 및 판매 대행 협약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지능센터(이하 '센터')와 홍보 위탁을 맡은 안전 파트너스(이하 '위탁 업체')은 아래와 같이 「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 공동협력 업무협약」 (이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위탁업체가 스마트치안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데이터 및 서비스를 공공·민간에 홍보하고 판매와 기획을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1. 센터는 안전 파트너스에 플랫폼 데이터와 서비스 홍보와 판매 기획을 위탁한다.
2. 위탁 업체는 센터와 합의한 내용으로 홍보한다.
3. 위탁 업체는 센터와 상호 협의를 통해 중간 및 최종 목표를 선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3. 수요창출 활동에 대한 회신을 정리해 센터 쪽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4. 협약 체결 이후 중간 및 최종결과보고를 통해 쟁점 및 진행 사항을 공유한다.
5. 가격정책 및 데이터 기획은 센터와 의사소통한 후, 결정을 반영한다.
6. 센터와 위탁 업체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준수하고 상호 협조한다.

제3조(업무협력의 범위) ① 통상적 업무협력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홍보 대상 구체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융합데이터 정의 및 서비스 판매 절차·제공방식을 수립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위탁업체는 센터가 지정하는 수요 기관에 대해 자료 전달 및 잠재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신규상품 기획을 상호협력한다.
4. 센터와 위탁 업체는 본 협약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홍보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고, 협약기간 동안 성과물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② 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관련 법규 및 관습에 따른다.

제4조(산출물 공유 및 활용) 산출물의 소유는 기본적으로 센터 측에 있으나 최종 보고 시 산출물에 대한 협의를 상호 논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의무와 비용) ① 위탁사는 협약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170여개소 이상의 공공과 민간기관에 홍보자료를 전송·게재하고, 그 대상과 경과, 회신여부, 홍보의 방법, 진행 절차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센터에 자문결과로 제공한다.

② 센터는 위 전항의 자문 결과에 따라 월 200만원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한다.

제6조(권리와 책임) ① 협약 당사자들은 본 공동연구를 통하여 취득한 관련 정보,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 활용한다.

② 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관련정보와 기술, 지적재산권의 실시권에 대한 비밀을 준수한다.

③ 협약 당사자들은 본 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으로 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202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이 협약의 유효기간 이내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합의 하에 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① 상호 기관은 협력과정 중 인지한 사항에 대해 양측의 합의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당해 협력이 종료된 후에도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유효하다.

② 협약 당사자는 제1항의 정보 유출방지 이외 기타 정보보호 활동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한다.

제9조(보칙) 본 협약의 체결을 증빙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7월 20일

Total Solutions in Policing
치안정책연구소

스 마 트 치 안 지 능 센 터
센 터 장 장 광 호

장광호

SOCIAL SECURITY PARTNERS
안전파트너스

대 표 엄 도 열

엄도열